

대전관광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내규

제정 2011. 11. 3. 내규 제 20 호
개정 2015. 5. 26. 내규 제 146 호
개정 2015. 7. 22. 내규 제 148 호
개정 2016. 2. 24. 내규 제 159 호
개정 2016. 2. 26. 내규 제 160 호
개정 2016. 4. 4. 내규 제 163 호
개정 2017. 12. 22. 내규 제 194 호
개정 2018. 4. 19. 내규 제 206 호
개정 2018. 10. 8. 내규 제 236 호
개정 2019. 2. 20. 내규 제 243 호
개정 2019. 3. 28. 내규 제 245 호
개정 2019. 5. 31. 내규 제 249 호
개정 2020. 5. 21. 내규 제 266 호
타규정개정 2021. 12. 24. 내규 제 350 호
개정 2022. 1. 11. 내규 제 355 호
개정 2022. 6. 27. 내규 제 374 호
개정 2022. 12. 29. 내규 제 399 호
개정 2023. 9. 7. 내규 제 419 호
타규정개정 2024. 1. 19. 내규 제 448 호
개정 2024. 9. 11. 내규 제 466 호
개정 2025. 1. 22. 내규 제 471 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한다)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대전관광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4.,2025.1.22.>

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8.4.19.>
 - 가. 공사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 나. 인·허가, 검사, 감사,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
 - 다.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라. 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 마. 공사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바.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사. 그 밖의 사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
2. “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사무 위임·위탁의 경우 관련 공무원 포함)을 말한다.
 - 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 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소속 기관 임직원
 -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위탁을 받는 임직원
 - 라. 그 밖의 사장이 정하는 임직원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12.22.>
 -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4. <삭제 2017.12.22.>

제3조(적용범위) 강령은 공사에 속한 모든 임직원(비정규직 포함)에게 적용 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①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30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개정 2018.4.19.>

③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9.>

④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사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 <삭제 2022.6.27.>

제5조의1 <삭제 2022.6.27.>

제5조의2 <삭제 2022.6.27.>

제5조의3 <삭제 2022.6.27.>

제5조의4 <삭제 2022.6.27.>

제5조의5 <삭제 2022.6.27.>

제6조(특혜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공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2.22.>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사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인사 청탁 등 금지) ①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투명한 회계 관리) 임직원은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1조(이권개입 등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의 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법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7.22.,2018.4.19.>

②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7.22.,2018.4.19.>

③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4.19.>

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및 용역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사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13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돋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삭제<2022.6.27.>

제14조의1(사적 노무 요구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8.4.19.]

제14조의2(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임직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3.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轉嫁)하거나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개정 2022.6.27.>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개정 2022.6.27.>
 - 가.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
 -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임직원, 제4호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개정 2022.6.27.>

[본조신설 2019.2.20.]

제14조의3(공사에서 주관하는 위원회 등 명목의 수당 금지) 임직원이 담당 업무 수행과 관계없이 공사가 주관하는 각종 위원회 등에 참석하여 회의, 심사(심의), 자문, 평가 및 안건 검토등을 수행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을 지급하거나 받을 수 없다. 다만, 비상근 임직원이 위원회등에 참여하는 경우 내부규정에 따라 지급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9.2.20.]

제15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8조의2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사장이 소속 임직원이나 파견 임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임직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임직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임직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임직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⑤ 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에게 또는 그 임직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⑦ 임직원은 공사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7.12.22.]

[제목개정 2018.4.19.]

제16조 <삭제 2017.12.22.>

제17조 <삭제 2017.12.22.>

제18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① 임직원은 공사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의 입찰·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17.12.22.>

② 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18조의2(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3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사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5.21.,2022.6.27.>

③ 임직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1.>

④ <삭제 2020.5.21.>

⑤ 사장은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직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개정 2020.5.21.,2025.1.22.>

1.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한 과도한 참석.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인사규정시행내규 제50조제1항에 따른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직원
3. 근속기간 1년 미만의 직원

대전관광공사 임직원행동강령내규

⑥ 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사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⑦ 임직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8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사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⑧ 임직원이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별지 제29호 서식에 따라 외부강의 실시일 3일 전까지 사장의 승인을 받은 후 감사부서에 신고해야 한다.<개정 2025.1.22.>>

1.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한 과도한 참석.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인사규정시행내규 제50조제1항에 따른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직원 <신설 2025.1.22.>>

3. 근속기간 1년 미만의 직원<신설 2025.1.22.>>

⑨ 외부강의등의 출강시 담당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거나 공사의 기능수행 및 국가정책 수행 목적상 필요한 경우 출장처리하고 이외의 사적인 외부강의등의 경우에는 연가·외출·조퇴 등으로 처리한다. <신설 2019.3.28.>>

[전문개정 2017.12.22.]

제18조의3(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① 임직원은 사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6호 서식으로 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사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임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임직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사장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7.12.22.]

제19조 <삭제 2022.6.27.>

제20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①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

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개정 2017.12.22.>

1. 친족에 대한 통지(「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단체의 소속 직원에 대한 통지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4.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제20조의1(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 감독·감사·조사·평가 등을 하는 기관(이하 이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임직원은 소속기관의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감사·조사·평가 등을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2. 감독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의 요구
- ② 감독기관에 소속된 임직원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임직원은 그 이행을 거부하여야 하며, 거부에도 불구하고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28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2.20.]

대전관광공사 임직원행동강령내규

제21조(성희롱 금지) 임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접촉하는 행위
2.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3. 상대방의 외모에 대해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4.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5. 회식자리 등에서 술시중이나 춤을 강요하는 행위
6.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제22조(사행성 행위의 제한) ① 임직원은 사회통념을 벗어난 도박·내기골프 등과 같은 사행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제2조 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직무관련임직원과 골프를 같이 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골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기관장 또는 각급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신고해야 한다. 다만, 사전신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료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 받은 기관장 및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④ 임직원은 제2조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직무관련자와 함께 마작·화투·카드 등 우연한 결과나 불확실한 승패에 의하여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하는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위반시의 조치 등

제23조(준수의무와 책임) 공사의 모든 임직원은 공사에 소속됨과 동시에 이 강령을 성실히 준수하고 그에 따른 의무 및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① 임직원은 알선·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에 대하여 이 강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

강령책임관은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2., 2019.2.20.>

② 사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5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그 임직원이 사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7.12.22.>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신고인의 신분보장) ① 사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5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사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25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강령에 의한 상담·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26조의1(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 ① 사장은 소속 임직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2.22.]

제27조(징계) ① 사장은 이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공사의 징계관련 규정에

따른다. 다만,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자체 징계양정기준 등에 따라서 처리하되, 별표 1의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하며, 제26조를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加重하여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17.12.22.>

제28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 임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 표시를 받은 경우

2. 임직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임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 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8호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사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사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8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 ·

감사·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제출·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사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⑥ 사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9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사장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12.22.]

제6장 보칙

제29조(교육) ① 사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2.>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 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신설 2019.2.20.>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이권개입·알선·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임직원이 지켜야 할 사항

4.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임직원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0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사장은 이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전관광공사 임직원행동강령내규

여 안전감사팀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16.2.24., 2017.12.22., 2018.10.8., 2024.1.19.>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강령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2. 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 삭제 <2017.12.22.>

⑤ 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할 수 있다.
<신설 2017.12.22.>

제31조(준수 여부 점검)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 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포상) 사장은 강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33조(행동강령의 운영) 사장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내규 제20호, 2011.11.3.>

이 내규는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내규 제146호, 2015.5.26.>

이 내규는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내규 제148호, 2015.7.22.>

이 내규는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내규 제159호, 2016.2.24.>

이 내규는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내규 제160호, 2016.2.26.>

이 내규는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내규 제163호, 2016.4.4.>

이 내규는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내규 제194호, 2017.12.22.>

이 내규는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내규 제206호, 2018.4.19.>

이 내규는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내규 제236호, 2018.10.8.>

이 내규는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내규 제243호, 2019.2.20.>

이 내규는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내규 제245호, 2019.3.28.>

이 내규는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내규 제249호, 2019.5.31.>

이 내규는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내규 제266호, 2020.5.21.>

이 내규는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내규 제350호, 2021.12.24.>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④ 대전마케팅공사 임직원행동강령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마케팅공사 임직원행동강령내규”를 “대전관광공사 임직원행동 강령내규”로 한다.

대전관광공사 임직원행동강령내규

제1조, 별지 제10호 서식, 별지 제13호 서식, 별지 제21호 서식 중 “대전 마케팅공사”를 각각 “대전관광공사”로 한다.

④②부터 ④⑤까지 생략

제3조(다른 사규와의 관계) 이 내규 시행 당시 다른 사규에서 대전마케팅 공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내규에 따른 대전관광공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내규 제355호, 2022.1.11.>

이 내규는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내규 제374호, 2022.6.27.>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반행위에 대한 징계 등 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 전에 종전의 제5조, 제5조의1부터 제5조의5까지, 제14조 및 제19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27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내규 제399호, 2022.12.29.>

이 내규는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내규 제419호, 2023.9.7.>

이 내규는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내규 제448호, 2024.1.19.> (직제규정시행내규)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규정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대전관광공사 임직원행동강령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안전감사팀장”으로 한다.

부칙 <내규 제466호, 2024.9.11.>

이 내규는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6.4.4., 2017.12.22.>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제27조 관련)

비 위 유 형	수 수 행 위	금 액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수 동	감봉 · 정직 · 강등	강등 · 해임 · 파면	해임 · 파면	파면
직무와 직접적인 관계 없이 금품등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	능 동	정직 · 강등 · 해임	해임 · 파면		파면	
	수 동	정직 · 강등 · 해임	해임 · 파면		파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였으나, 위법 · 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능 동	강등 · 해임 · 파면			파면	
	수 동	강등 · 해임 · 파면			파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고, 위법 · 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능 동	해임 · 파면			파면	
	수 동	강등 · 해임 · 파면			파면	

[별표 2] <신설 2017.12.22.> <개정 2018.4.19.,2022.1.11.,2023.9.7.,2024.9.11.>

음식물 · 경조사비 · 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5조 관련)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5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 · 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 · 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 · 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다음 각 목의 금품등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상품권(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하며, 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은 15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한다.

가. 금전

나. 유가증권(상품권은 제외한다)

다. 제1호의 음식물

라. 제2호의 경조사비

비고

- 가. 제1호, 제2호 본문 · 단서 및 제3호 본문 · 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 · 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 · 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 다. 제3호에서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발행·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 등으로부터 해당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물품상품권 또는 용역상품권을 말하며, 백화점상품권·온누리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문화상품권 등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소지자가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금액상품권은 제외한다.
- 라.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또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5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하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 마.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 바. 공공기관의 장은 업무 특성에 따라 위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의 금품등 수수 제한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별표 3] <신설 2017.12.22., 2018.4.19.>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18조의2 제1항 관련)

1. 사례금 상한액

- 가. 상한액 : 40만원(임직원)
- 나.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 가. 제1호가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 나. 임직원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 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다. 제1호가목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 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임직원이 공사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사례금 제공기관이 기관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별지 제1호 서식]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소명인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상급자 (지시자)	성명		직위(직급)	
지시받은 사항				
소명 내용				
20 . . . 소명인 (서명)				

[별지 제2호 서식]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				
상담요청인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상급자 (지시자)	성명		직위(직급)	
지시받은 사항				
공정한 직무를 저해하는 사유				
20 . . .				
상담요청인			(서명)	

[별지 제3호 서식]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				
보고자 (상담요청인)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직급)	
정치인 등 인적사항	성명		직책	
	소속		전화번호	
요구사항				
부당한 근거				
20 . . . 보고자(상담요청인) (서명)				

대전관광공사 임직원행동강령내규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17.12.22., 2019.3.28.>

외부강의등 신고서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연락처	
외부 강의등 유형	<input type="checkbox"/> 교육, 홍보, 세미나,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input type="checkbox"/> 회의	<u>외부강의등 목적</u>	<input type="checkbox"/> 직무수행 및 공사 위원회 가능수행 <input type="checkbox"/> 국가정책 수행 <input type="checkbox"/> 사적인 외부강의 등	
활동 유형	<input type="checkbox"/> 강의, 강연 <input type="checkbox"/>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input type="checkbox"/> 기고 <input type="checkbox"/> 기타()	
요청자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요청 사유				
외부강의등 주제				
장소				
일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일괄 신고	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	
사례금	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			
20 . . .				
신고자 (서명)				
유의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속에 별도 기재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u>직무수행 및 공사 기능수행, 국가정책 수행 목적일 경우 해당 증빙자료 첨부</u>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자가 요청한 공문서를 첨부하여 신고 				

[별지 제5호 서식]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신고서				
신고자	소 속			
	직 급(위)		성 명	
신 고 내 용				
일 시		장 소		
참석자	※ 소속, 직책, 성명 기재			
비용부담	※ 본인여부, 카드 사용여부 등 기재			
사 유				
비 고				
20 . . .				
신고자			(서명)	

대전관광공사 임직원행동강령내규

[별지 제6호 서식]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접수.처리 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시	신고자 인적사항			신 고 내 용			결재	비고
		소속	직급(위)	성 명	일시	장소	참석자		

※ 획서식으로 작성

[별지 제7호 서식] 삭제<2022.6.27.>

대전관광공사 임직원행동강령내규

[별지 제8호 서식] <개정 2018.4.19.>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청 구 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 (직급)	
청구금액				
반환계좌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	금 품 (물 품)			
	수 량 (금 액)			
	받은일시			
	반환일시			
	증빙서류 목록	※증빙서류(사본) 첨부		
반환받는 사 람	성 명		주 소	
	연 락 처		청구인과의 관계	
	직무관련 내 용			
기 타 사 항				
20 청 구 인 (서명)				

[별지 제9호 서식] <개정 2018.4.19.>

금품등 관리대장																	
일련 번호	신고 접수 번호	신고일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 액)	신고자			제공자			인도일	관리 부서 (관리 자)	보관 장소	처리 결과	처리일	비고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성명						

대전관광공사 임직원행동강령내규

[별지 제10호 서식] <개정 2018.4.19., 2021.12.24.>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신고자	성명	(서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피신고자	성명		직위 (직급)	
	소속 및 직위(직급)		연락처	
	주소			
	법인 · 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부동의
신고취지 및 이유				
행동강령 위반행위 내용	일시			
	장소			
	내용			
증빙자료 목록	※ 증빙자료 첨부			
비고	(처리기한 : 60일)			
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신고자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대전관광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개정 2017.12.22.>

상담기록관리부			
상담일시		상담유형	방문·전화·기타()
상담요청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직위(직급)		연락처
상담내용			
상담결과			
20 . . . 행동강령책임관 (서명)			

대전관광공사 임직원행동강령내규

[별지 제12호 서식]

행동강령 위반행위자 징계의결 미요구 사유서				
위 반 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위반 행위	통보받은 문서번호			
	위반내역			
■ 징계의결 미요구 사유				
20 . . .				
확인자 (직위)		(서명)		

[별지 제13호 서식] <개정 2021.12.24.>

행동강령준수 서약서

본인은 대전관광공사에 근무를 향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염숙히 서약합니다.

1. 행동강령규정을 준수함은 물론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시에 순응 하겠습니다.
2. 행동강령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고의 태만으로 강령취지에 위반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을 하지 않겠습니다.
4. 자신의 인사에 관하여 본인 및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지 않겠습니다.
5.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할 것이며,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 불공정한 거래조건의 강요 등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다.
6. 건전한 경조사 문화정착을 위해 솔선수범할 것이며, 직무 관련자 또는 직무 관련 임·직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지 않겠습니다.
7. 직장 내 혈연, 지연, 학연 등과 관련하여 파벌을 조성하거나 사조직 등을 결성하지 않을 것이며, 가입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서약하오며 만일 서약 사항을 위반하여 공사의 위상을 저해하거나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여하한 처분은 물론 해당 손해액을 자체 없이 전액 배상하겠기에 본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대전관광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14호 서식] <개정 2017.12.22., 2018.4.19., 2019.2.20.>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운영 실적

('00년 상반기/하반기, 기관명)

1. 기본사항

가. 행동강령 적용인원 : 명

※ 적용인원 : 기준일 현재 총 현원(상반기 : 6. 30. / 하반기 : 12. 31. 기준)

나. 클린신고센터 설치수 :

다. 행동강령책임관(기관 본부)

소속		성명	
직위		연락처	
이메일			

라. 행동강령 및 관련 지침

○ 제 · 개정 내역

명칭			
제정·개정	제정 (), 개정 ()	일자	20 . . .
주요 내용			

※ 기준일 현재 시행 중인 행동강령 및 관련 지침 파일 제출(첨부①)

2. 행동강령 이행환경

가. 기관 홈페이지 신고창구 운영

- 신고창구 접속 경로 : (예: 시작화면 → 민원마당 → 부패신고)
- 시작화면 ~ 신고창구까지의 클릭 횟수 : 회

나. 국민권익위원회 사이버신고센터 접근 용이성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상담 사이트 링크 여부 : 여 · 부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상담 사이트까지의 클릭 횟수 : 회

다. 신고자 인센티브 부여제도

- 신고자 인센티브 부여제도 : 관련 파일 제출(첨부②)

- 신고자 인센티브 부여제도 운영 현황

구 분	신고 건수	포상 건수	포상금 등 지급실적	인센티브 부여 건수	비 고
계			원(상당)	* 인사상 우대 등	
내 부					
외 부					

3. 추진실적

가. 행동강령 관련 상담 현황

- 행동강령 관련 상담 및 조치 현황

상담 분야 총계	상담건수	조치건수	비고
①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②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③ 임원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④ 직무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⑤ 가족채용 제한 ⑥ 수의계약 체결 제한 ⑦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⑧ 특혜의 배제 ⑨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⑩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 ⑪ 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⑫ 투명한 회계관리 ⑬ 이권개입 등의 금지 ⑭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⑮ 알선 · 청탁 등의 금지 ⑯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⑰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 · 수익 금지 ⑱ 사적노무의 요구 금지 ⑲ 직무권한등을 남용한 부당행위의 금지 ⑳ 금품등의 수수 금지 ㉑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㉒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㉓ 직무관련자등과의 거래 신고 ㉔ 경조사의 통지 ㉕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㉖ 기타			

나. 외부강의등 신고 현황

구 분	총 계	강의 · 강연	발표 · 토론	심사 · 평가 자문 · 의결	기 타
신고건수	건	건	건	건	건
신고인수	명	명	명	명	명
외부강의등 시간(누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대 가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 ※ 1. 소속 기관 임직원의 신고실적도 포함
- 2. 60분까지는 1시간, 1시간 초과 2시간까지는 2시간 등으로 기재
- 3. 동일인이 수 회 신고하여도 신고인은 1인으로 계산

다. 금품등 반환신고 현황

○ 신고 현황

구 分	건 수	금 액(천원)	비 고
계			
수수 금지 금품등 (공무원행동강령 제14조 관련)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 (공무원행동강령 제15조 관련)			

○ 처리 현황

구분	계	반 환	기 중	폐 기	기 타	처리중
건 수	()	()	()	()	()	()
금 액						

- ※ 즉시 반환하여 그 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건수만 “건수란”에 ()로 표시

라. 행동강령 위반행위 적발 현황

위반건수(건)			자체적발률(%)
계 (A+B)	자체적발건수 (A)	외부기관통보건수 (B)	$\frac{A}{A+B} \times 100$

4. 행동강령 실천의지

가. 행동강령 교육

- 교육인원(누계) : 명 ※ 소속 기관 교육인원 포함

- 교육실시 내역 ※ 공공기관 본부 실적만 기재

구분	일시	장소	참석인원(명)	주요내용	교재 제작 여부
누계	-	-		-	-
1					
:					

나. 행동강령 이행실태 지도·점검

구분	점검 기간	점검 일수	점검 인원	주요 점검사항	위반행위 적발건수
누계	-			-	
1					
:					

다. 행동강령 수범 우수사례 수상 및 홍보 실적

- 수범 사례

- 수상 내역

수상명	수상 일시	수상 내역	비고

- 홍보 실적

구분	홍보매체	홍보 횟수	홍보 내용	비고
계				

5. 행동강령 위반행위자 적발·처리 내역

※ 위반행위자 별로 별도 작성

1. 위반행위자 소속 직급 [] 임원 [] 관리자 [] 직원				일련번호 직위 성명 (설명기재)	20 -	
2. 위반행위 및 적발·처분일 위반행위일 ()년 ()월 적발일 ()년 ()월 징계 등 [] ()년 ()월 처분일 [] 진행중						
3. 위반행위 처리결과 [] 파면 [] 해임 [] 강등 [] 정직 [] 감봉 [] 견책 [] 불문경고 [] 경고·주의 [] 기타(훈계·전보발령 등)						
4. 적발기관 자체적발 [] 내부공익신고 [] 진정/신고 [] 자체감사 [] 기타(직접기재:) 외부기관 [] 상급 감독기관 [] 감사원 적발 [] 검찰청 [] 경찰청 [] 국무총리실 [] 국민권익위원회 [] 기타(직접기재:)						
5. 행동강령 위반행위 내역						
유형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 임원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 직무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 가족채용 제한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 특혜의 배제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 [] 인사 청탁 등의 금지 [] 투명한 회계관리 [] 이권개입 등의 금지	[]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 알선·청탁 등의 금지 []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 사적노무의 요구 금지 [] 직무관련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 금품등의 수수 금지 []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 직무관련자등과의 거래 신고 [] 경조사의 통지 []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 기타(직접기재:)				
	내역	○ 6하 원칙에 의거, 위반행위 내용, 적발·조치 내역을 상세히 기재				

6. 기타

- 운영상 애로사항
- 개선조치 요청
- 건의사항 등

[별지 제15호 서식] <신설 2017.12.22.>

금품등 수수 신고서				
신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연락처	
	주 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	성 명			
	직업(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 · 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제공자와 친분관계를 맺게 된 경위				
금품등을 제공받게 된 경위				
금품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증빙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20 . . .				
신고자 (서명)				

대전관광공사 임직원행동강령내규

[별지 제16호 서식] <신설 2017.12.22.>

초과사례금 신고서

신 고 자	성 명		소 속	
	직위 (직급)		연락처	
외부 강의 등 유형	<input type="checkbox"/>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input type="checkbox"/> 회의			
활동 유형	<input type="checkbox"/> 강의, 강연 <input type="checkbox"/>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input type="checkbox"/> 기고 <input type="checkbox"/> 기타()	
요 청 자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요청 사유				
외부강의등 주제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사례금	총액 _____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_____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			
초과사례금 반환	초과사례금 액수 : _____ 천원 반환여부 : _____ 반환금액 : _____ 반환방법 : _____ ※증빙서류 첨부			
20 . . .				
신고자		(서명)		

[별지 제17호 서식] <신설 2017.12.22.>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서				
신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연락처	
	주 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	성 명			
	직업(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 · 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신고취지 및 이유				
금품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금품등 반환여부 및 방법	반환여부			
	반환 일시 · 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20				
신고자 (서명)				

대전관광공사 임직원행동강령내규

[별지 제18호 서식] <신설 2017.12.22.>

금품등 인도확인서				
인 도 자	성 명		소 속	
	직위(직급)		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의 인도를 확인합니다.				
인도일 :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인수자	소속 :	성명 :	(서명)	

[별지 제19호 서식] <신설 2017.12.22.>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				
인도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의 폐기처분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대전관광공사 임직원행동강령내규

[별지 제20호 서식] 삭제<2022.6.27.>

[별지 제21호 서식] 삭제<2022.6.27.>

[별지 제22호 서식] 삭제<2022.6.27.>

[별지 제23호 서식] 삭제<2022.6.27.>

[별지 제24호 서식] 삭제<2022.6.27.>

[별지 제25호 서식] 삭제<2022.6.27.>

[별지 제26호 서식] 삭제<2022.6.27.>

[별지 제27호 서식] 삭제<2022.6.27.>

[별지 제28호 서식] <신설 2019.2.20.>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요구자	성명	직위(직급)
	소속	
요구받은 사항		
부당한 요구로 판단한 이유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대전관광공사 임직원행동강령내규

[별지 제29호 서식] <신설 2025.1.22.>

외부강의등 실시 사유서			
소 속		성 명	
강의명		강의날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요 청 기관명		담당자명 (연락처)	()
제 한 유 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누적횟수시간, 신분상 처분 입사일로부터 경과기간 등 기재		
초 과 사 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